분쟁 해결 과정

공립교육 사무국

**분쟁 해결 과정**

**아동 및 청소년의 학군 배치**

**홈리스 상황에서**

**배경 정보**

McKinney-Vento 홈리스 지원법(이하, ‘법 또는 McKinney-Vento 법)은 학군이 출신 학교나 학부모 또는 비동반 청소년이 요청한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 학생을 배치하려고 할 경우에 학군과 홈리스 학생과 학생의 학부모, 또는 비동반 청소년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해당 법은 지역교육기관(LEA) 연락사무관의 필수 의무들 사이의 분쟁 해결을 포함합니다. 워싱턴주 공립교육 사무국(OSPI)은 McKinney-Vento 법의 요구에 따라 분쟁 해결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학군들은 학교 선택이나 등록과 관련된 분쟁은 학군의 요청이나 편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학부모나 비동반 청소년의 요청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홈리스(homelessness)의 정의에 관한 문제, 홈리스 아동과 청소년에게 봉사해야 하는 학군의 책임, 및/또는 홈리스 아동 및 청소년의 명시적 권리가 McKinney-Vento 법에 다루어져 있습니다. 홈리스 아동 및 청소년의 학교 배치와 등록 에 관한 분쟁은 McKinney-Vento 연방법의 조건 안에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홈리스 아동 및 청소년의 학교 배치에 대한 분쟁 해결 과정은 McKinney-Vento 연방법의 어떤 부분도 교묘히 회피하거나 대체하려는 시도에 의해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절차들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등록:** 학교 선택이나 등록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아동이나 청소년은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등록이 요구된 학교에 즉시 출석해야 합니다. 비동반 청소년의 경우에, 홈리스 연락사무관은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등록이 요구된 학교에 해당 청소년이 즉시 등록하게 해야 합니다.

**서면 설명:** 학군은 학부모에게 또는 비동반 청소년의 경우에는 그 비동반 청소년에게 학교 배치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서면 설명은 결정에 항소할 수 있는 학부모 또는 비동반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연락사무관:** 분쟁 해결 과정의 신속한 수행을 위해 지정 LEA 홈리스 연락사무관이 배정됩니다.

**책임:**  학군은, 보통은 학군의 홈리스 연락사무관은 분쟁 해결 과정에 대해 홈리스 학생(들)의 학부모 또는 비동반 청소년에게 알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개요**

홈리스 아동 또는 청소년의 등록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다음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학군의 홈리스 연락사무관에게 레벨 I 항소를 제기합니다. 이 레벨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지역 학군 교육감(레벨 II)에게 항소하고 그래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OSPI에게 최종 항소(레벨 III)를 제기합니다. **OSPI까지 항소 단계가 올라가기 전에 지역 수준에서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분쟁 해결 과정의 개시**

**학군이 출신 학교, 또는 학부모나 비동반 청소년이 요청한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 홈리스 아동이나 창소년을 배치하려는 경우에, 학군은 아동/청소년의 학부모 또는 비동반 청소년에게 학군의 결정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학부모 또는 비동반 청소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형식으로 알려야 하고 다음을 제공해야 합니다.**

1. LEA 홈리스 연락사무관과 워싱턴주 조정관의 서면 연락처 정보와 그들의 역할에 대한 간략한 설명.
2. 학부모, 보호자, 또는 비동반 청소년이 분쟁 과정을 개시하기 위해 작성해서 학교에 제출할 수 있는 간단한 서면 탈착 가능한 양식(학교는 이 양식을 복사해서 복사본을 학부모, 보호자, 또는 청소년에게 반송하여 양식 제출 시 기록으로 갖고 있도록 합니다.)
3. 학군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한 서면 통지.
4.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선택 학교에 즉시 등록할 권리에 대한 서면 통지.
5. 학군 수준에서의 해결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에 워싱턴주에 항소할 권리에 대한 서면 통지.
6. 학군 수준과 주 수준에서의 항소를 해결해야 할 서면 시간표.

**레벨 I: LEA 연락사무관 소통**

**학부모 또는 비동반 청소년이 학생의 배치에 관한 학군의 결정에 항소하기를 원하는 경우:**

1. 학부모나 비동반 청소년은 학군 홈리스 연락사무관에게 분쟁 해결에 대한 요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분쟁 해결 과정을 개시하는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학부모나 비동반 청소년은 학군이 가족이나 비동반 청소년이 요청한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 학생을 등록시킬 의사가 있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영업일 내에 학군 연락사무관에게 분쟁 해결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부모나 비동반 청소년은 홈리스 연락사무관에게 직접 요청을 제출하거나 분쟁 당사 학교에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분쟁 당사 학교에 요청서가 제출되면, 학교는 학군 홈리스 연락사무관에게 이 요청서를 즉시 발송해야 합니다. 학군에 홈리스 연락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학군이 지명한 사람이 분쟁 해결 과정을 개시하겠다는 학부모의 또는 비동반 청소년의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홈리스 연락사무관은 분쟁 상황과 이유에 대한 서면 설명과 함께 불만 접수 날짜와 시간을 포함해 불만 접수에 대해 기록해야 하고, 불만제기서 사본이 연락사무관의 상관과 학군 교육감에게 발송되어야 합니다.
3. 불만 접수 후 5 영업일 이내에, 연락사무관은 불만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학부모나 비동반 청소년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홈리스 연락사무관의 레벨 I 결정에 관한 서면 통지를 학부모나 비동반 청소년이 수령했음을 확인하는 것은 학군의 책임입니다.
4. 학부모나 비동반 청소년이 레벨 1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분쟁 해결 과정을 레벨 II로 진행하기 원하는 경우에, 학부모나 비동반 청소년은 레벨 I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레벨 II를 진행했다는 의사를 학군의 홈리스 연락사무관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5. 학부모나 비동반 청소년이 연락사무관의 레벨 I 결정에 항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학군의 홈리스 연락사무관은 학부모나 비동반 청소년에게 다음을 포함한 항소 패키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1. 레벨 1에서 학군 홈리스 연락사무관에게 제출된 학부모나 비동반 청소년의 불만제기서 사본,
   2. LEA 연락사무관의 레벨 1결정, 그리고
   3. 학부모, 비동반 청소년, 및/또는 홈리스 연락사무관으로부터 입수한 추가 정보.

**레벨 II: LEA 교육감 소통**

(레벨 I 항소 후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1. 학부모가 레벨 I의 학군 홈리스 연락사무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학부모나 비동반 청소년은 레벨 I에서 제공되는 항소 패키지를 이용해서 지역 학군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지명한 사람을 상대로 그 결정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2.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지명한 사람은 학부모나 비동반 청소년과의 개인 면담 약속을 정합니다. 개인 면담 일정은 학부모나 비동반 청소년이 레벨 II 분쟁 해결 과정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학군에 통지한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정해집니다. 일정이 잡히고나면,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지명한 사람과 학부모나 비동반 청소년 사이의 면담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3. 지역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지명한 사람은 학부모나 비동반 청소년과의 개인 면담 후 5 영업일 이내에 증빙 자료 및 이유와 함께 서면으로 학부모나 비동반 청소년에게 결정 사실을 알립니다. 교육감의 레벨 II 결정에 관한 서면 통지를 학부모나 비동반 청소년이 수령했음을 확인하는 것은 학군의 책임입니다.
4. 레벨 II의 서면 결정과 함께 항소 패키지 사본을 학군 홈리스 연락사무관과 공유해야 합니다.
5. 학부모나 비동반 청소년이 레벨 II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분쟁 해결 과정을 레벨 III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학부모나 비동반 청소년은 레벨 II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레벨 III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학군 홈리스 연락사무소관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6. 그래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레벨 III이 진행됩니다.

**레벨 III:** **공립교육 사무국 (OSPI) 소통**

(레벨 II 항소 후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1. 학군 교육감은 레벨 II의 결정을 학부모나 비동반 청소년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모든 증빙자료와 관련 서류를 OSPI 홈리스 교육 조정관 또는 조정관이 지명한 사람에게 발송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2. 모든 증빙자료와 관련 서류를 포함한 전체 분쟁 패키지를 하나의 완전한 복합 패키지로 하드 카피 우편 배달을 통해서 OSPI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분쟁 패키지 중에서 따로따로 제출된 문서, 사후에 제출된 문서, 또는 분쟁 일정표를 연장하거나 계류 중인 분쟁 결과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에서 제출된 외부 문서는 OSPI가 심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분쟁 패키지를 OSPI에게 제출할 시점에 패키지가 완전히 준비시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것은 학군의 책임입니다.
3. OSPI 홈리스 교육 조정관이나 조정관이 지명한 사람은 해당 기관 책임자 및/또는 기관 부교육감과 함께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4. 최종 결정을 지역 학군 홈리스 연락사무관에게 전달하면 연락사무관이 학부모와 지역 교육감에게 전달합니다.
5. OSPI의 결정이 홈리스 아동이나 청소년의 학교 배치에 관한 최종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6. 학군 교육감 사무국은 홈리스 아동과 청소년의 학교 배치에 관한 모든 분쟁의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들은 레벨 I, 레벨 II, 및/또는 레벨 III에서 해결된 분쟁을 포함해야 하며 OSPI가 요청할 경우 열람이 가능해야 합니다.

**학군간 분쟁**

**학교 선택이나 등록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아동이나 청소년은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등록이 요구된 학교에 즉시 입학해야 합니다. 비동반 청소년의 경우에, 홈리스 연락사무관은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청소년이 학교에 즉시 등록하게 해야 합니다.**

홈리스 아동이나 청소년의 학군 배치에 관하여 학군들(LEA)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아동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법에 따라서 지역 수준에서 학군들이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LEA들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분쟁이 있을 경우에, 당사자인 학군들 중 한 곳이 이 분쟁에 대해 OSPI 홈리스 교육 조정자나 조정자가 지명한 사람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OSPI 홈리스 조정관이나 조정관이 지명한 사람이 분쟁을 접수한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OSPI 직원 회의를 열고 결정을 내린 후 학군 교육감, 학군 홈리스 연락사무관, 및 홈리스 아동의 학부모(들)나 홈리스 아동에게 서면으로 결정을 알려야 합니다.

OSPI의 결정이 홈리스 아동이나 청소년의 학군 배치에 대한 LEA들간 분쟁의 최종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2001년 McKinney-Vento 홈리스 교육법**

**42 U.S.C. §§ 11431, et. seq. (Chapter 119) , 아동 낙오 방지법에 의해 개정됨**

***아동 낙오 방지법*.**

**정책 성명**

**McKinney-Vento 홈리스 교육법 721(l)(2) 항:**

다음은 의회 정책입니다.

(1) 각 주립 교육 기관은 홈리스 부모의 각 아동과 각 홈리스 청소년이 공립 유치원 교육을 포함하여 다른 아동 및 청소년과 같은 수준의 적절한 무료 공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홈리스 아동 및 청소년의 학교 등록, 출석, 또는 성공적인 학교 생활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워싱턴주 의무 학교 출석 법이나 다른 법, 규정, 관행, 또는 정책의 한 부분으로 의무 거주 요건을 시행하는 주에서는 홈리스 아동과 청소년이 다른 아동과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적절한 무료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법, 규정, 관행, 또는 정책을 개정하기 위한 단계를 심사하고 절차에 착수할 것입니다.

(3) 집이 없다는 것 하나만으로는 주류 학교 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분리시켜야 할 충분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4) 홈리스 아동과 청소년은 워싱턴주의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쉽지 않은 학업 성취도 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 기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어 정의**

**홈리스 아동 및 청소년:** McKinney-Vento 홈리스 교육법 725(2)항에 따르면, ‘홈리스 아동 및 청소년’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정해진, 정기적, 적절한 야간 거주지가 없는 개인들을 의미합니다 (103(a)(1)항의 의미 안에서) [‘(1) 정해진, 정기적, 적절한 거주지가 없는 사람 또는 (2) 임시 숙소용으로 감독 하에 운영되는 공공 또는 민간 운영 쉼터(복지 호텔, 공동생활 쉼터, 정신질환자를 위한 과도기적 주택을 포함), 시설에 입주하려는 개인들을 위한 임시 거주지를 제공하는 시설, 또는 사람을 위한 정기적인 취침 숙소로 지정된 장소는 아니지만 평상 시에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공공 또는 민간 장소를 일차 야간 거주지로 사용하는 사람.’]; 그리고

(B) 다음을 포함합니다--

(i) 집을 잃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거나 비슷한 이유로 다른 사람들과 집을 나눠 쓰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 적당한 대체 숙소가 없어서 모텔, 호텔, 트레일러 파크, 또는 야영장에서 살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 병원에 버려진 아동 및 청소년; 가정위탁을 기다리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

(ii) 사람을 위한 정기적인 취침 숙소로 지정된 장소는 아니지만 평상 시에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공공 또는 민간 장소를 일차 야간 거주지로 사용하는 아동 및 청소년 (103(a)(2)(C)항의 의미 안에서);

(iii) 자동차, 공원, 공공 장소, 폐건물, 표준 이하의 주택, 버스 정거장이나 열차역, 또는 그와 비슷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1. 아동이 (i)조 ~ (iii)조에 설명된 상황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제 하에서 홈리스로 규정되는 이주 아동 (이 용어의 의미는 1965년 초중등교육법 제1309항에 정의되어 있음)."

이 법의 103(c)항은 의회법이나 주법에 의해 수감되거나 구금되는 사람을 홈리스 개인의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시켰습니다.

**비동반 청소년:** 이 법의 725(6)항은 “비동반 청소년”이 학부모나 보호자의 물리적 양육권을 받지 않는 청소년을 포함한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이 법에 설명된 홈리스 상황에서 혼자 살고 있는 청소년에게 이 법이 적용됩니다.

**고정된 거주지:** 변경되지 않고 고정적이고 영구적인 거주지

**정기적 거주지:** 정기적으로(예: 밤마다) 사용되는 거주지.

**적절한 거주지:** 가정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충족되는 신체적 및 심리적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거주지.

**학부모:** 이 정책 하에서, 학부모는 학부모, 법적 보호자, 또는 아동에 대한 법적 양육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출신 학교:**McKinney-Vento 홈리스 교육법 722 (g)(3)(G)항에 정의된 출신 학교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영구적 거주지가 있었을 때 출석했던 학교나 마지막으로 등록했던 학교입니다.

**등록:** “등록하다”와 “등록”은 수업에 출석하고 학교 활동에 충실히 참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